

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6. 7. 1.>

세무서의 등급구분(제19조제3항관련)

등 급 구 분	해 당 세 무 서
1 급 지 세 무 서	서울특별시·전남광주통합특별시(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·광산구·목포시·여수시·순천시로 한정한다)·부산광역시·대구광역시·인천광역시·대전광역시·울산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수원시·용인시·안양시·안산시·부천시·시흥시·광명시·성남시·의정부시·포천시·이천시·남양주시·구리시·고양시·파주시·평택시·화성시·김포시·광주시·춘천시·원주시·강릉시·천안시·아산시·청주시·충주시·군산시·전주시·익산시·경산시·경주시·포항시·구미시·창원시·김해시·양산시·진주시·통영시 및 제주시에 소재하는 세무서
2 급 지 세 무 서	1급지세무서를 제외한 세무서